

의안번호	2206078
의 퇴 인	한병도 의원
회 답 일	2024.12.13.
추계번호	24C55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나.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임

1) 안 제13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 함.
다만, 현행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해당 지원의 내용으로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융자 및 투자, 자금조달,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등’ 행정·재정적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제4항의 시행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²⁾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를 말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균형인재”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역균형인재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법 제5조) 및 연도별 시행계획(법 제6조)의 내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법 제8조)의 심의 내용, 해외교류·연수 공동기회 보장 학생의 범위 등(법 제11조),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대상 학생(법 제12조),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상 학생(법 제13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우대 채용되는 범위(법 제14조), 대학원 입학 기회 확대 대상(법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상 확대(법 제16조),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대상(법 제18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협의·조정 사항(법 제19조), 고용영향평가 내용 변동(법 제20조)’ 등이 예상됨
 - 지역균형인재 범위가 확대될 경우 내용 변동이 예상되는 조항 중 법 제12조 및 제13조 등 예산상 변화가 크지 않을 규정도 있으나, 법 제16조의 정착지원 사업 등 재정소요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도 존재함
 - 참고로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³⁾(국비 총 342,000백만원, 지방비 30% 이상 편성 의무),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⁴⁾(국고 80,000백만원) 사업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3) 비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지역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 6개 플랫폼과 2023년 3개의 신규 플랫폼 등 총 9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전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4)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⁵⁾

-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⁶⁾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원사업이 추가·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인재 범위 변화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사업변화 가능성 및 규모 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업으로 1인당 565만원을 지원

5) 이외에도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국토부)’, ‘지역특화산업 육성(중기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산업부)’, ‘교육발전특구(교육부)’ 등의 사업이 있음

6) 강원도 원주시 우수인재 학습지원비 지원, 강원도 화천군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 등